

증평출장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995. 12.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개 요	743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규모	743
나. 증평출장소소관 세출예산안규모	744
2. 검토의견	745

1. 개요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611,537	100	616,510	100	△4,973	△0.8
인건비	42,195	6.9	43,069	7.0	△874	△2.0
물건비	32,757	5.4	32,692	5.3	65	0.2
이전경비	123,893	20.3	122,084	19.8	1,809	1.5
자본지출	386,261	63.2	393,545	63.8	△7,284	△1.9
용자 및 출자	7,678	1.3	7,678	1.2	-	-
보전재원	1,815	0.3	1,815	0.3	-	-
내부거래	8,156	1.3	6,463	1.0	1,692	26.2
예비비 및 기타	8,782	1.4	9,163	1.5	△381	△4.2

○ '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165억1천만원 대비 0.8%인 49억7천3백만원이 감액된 6,115억3천7백만원 규모임.

나. 중평출장소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추 경) '94예산(안)		증 △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28,829	100	29,057	100	△229	△0.8
인 건 비	4,319	15.0	4,575	15.7	△256	△5.6
물 건 비	2,914	10.1	2,909	10.0	5	0.2
이 전 경 비	1,628	5.6	1,664	5.7	△36	△2.2
자 본 지 출	19,880	69.0	19,322	68.2	58	0.3
용자 및 출자	-	-	-	-	-	-
보 전 계 원	87	0.3	87	0.3	-	-
내 부 거 래	-	-	-	-	-	-
예비비 및 기타	-	-	-	-	-	-

- 중평출장소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8억2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90억5천7백만원에 비하여 0.8%인 2억2천9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 도전체 일반회계 6,115억3천7백만원에 비하여는 4.7%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2. 검토 의견

1995년도 증평출장소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관 장비지원과 거택보호자 월동대책, 유아보육시설운영 지원 및 농어촌특산 단지육성 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급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0억5천7백만원에 비하여 0.8%인 2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288억2천9백만원 규모임.

○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 기본적 경비에 있어

· 인건비	2억5천6백만원 (5.6% 감)
· 물건비	5백만원 (0.2% 증)
· 이전경비	3천6백만원 (2.2% 감)

- 사업비에 있어서는

· 자본지출	5천8백만원 (0.3% 증) 으로
--------	--------------------

평성되어 있음.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첫째, 인건비에 있어서 43억1천9백만원은 기정예산액 45억7천5백만원에 비해 5.6%인 2억5천6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이는 '95 예산편성시 해당직급 기준호봉에 의해 계상된 예산에 대해 실질집행액과의 차액발생액에 대해 불용액발생 방지 및 예산의 적정운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삭감조정하는 것에 기인함.

둘째, 물건비에 있어서 29억1천4백만원은 기정예산액 29억9백만원에 비해 0.2%인 5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는 중평출장소의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소정홍보책자 제작비 3백만원과 장애자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의료비 지원비 2백만원과,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및 국도, 지방도의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표주도색 및 경계표지판 설치비로 1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는 인접지역의 지역적사업에 관하여 도집행기관으로 부터의 재원분배된 성격의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으로서 인정해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셋째, 이전경비에 있어서 16억2천8백만원은 기정예산액 16억6천4백만원 대비 2.2% 3천6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 예산기능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장애인 자녀교육비 △1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1천만원
-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5천1백만원
- 거택보호자 월동 대책비 2천만원
- 부자가정 지원 △1백만원
- 노령수당 △5백만원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3백만원
-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2백만원
- 보육시설 운영비 1천5백만원
-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및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1백만원
- 장병경사 의무자 여비보상 △1백만원 으로

이는 계속적 월동기대책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사회복지지원 예산이 증액계상된 것이니

감액의 주요인으로는 집행잔액적 성격의 삭감조정 예산으로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에 의한 사업으로 지원기준의 변경과 진출

입 및 사망등의 요인에 의해 지원대상자가 감소되므로써 국비 및 도비지원금이 삭감조정 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증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네째, 자본지출에 있어서 198억8천만원은 기정예산액 198억2천2백만원 대비 0.3%인 5천8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 예산기능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 | |
|----------------|----------|
| -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 | 1천만원 |
| -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 | 7천만원 |
| -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 △1천8백만원 |
| - 젓소경쟁력 제고사업 | △4백만원 으로 |

이는 사회복지 및 특산물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증액계상과 축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국·도비지원 사업인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를 감액조정하는 정리적 차원의 증감예산인 것으로 인정하여 증이 타당하나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관한 육성 방향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